

제10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
2004. 4. 30. 10:00

< 4 , 1 >

1.		-----	1
2.		-----	4
3.		-----	8
4.		-----	10
5. 2004	1	-----	15

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4. 20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11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4. 28(총무위원회)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국제연극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등으로 외국인과 타 지방 유명인사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지만, 이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 활용이 전무한 실정임.
- 이에 거창군명예군민증서 수여 사업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정수행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거창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을 정함
-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

-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여대상자에 대한 적격 및 취소여부를 심사하도록 함
- 우호증진을 위하여 거창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
-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를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필요시 기념품도 수여토록 함
-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(안 제8조)

- 우호증진 또는 군의 주요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외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둠.

나.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
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 (수여대상자 결정)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 <u>다만,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 (수여대상자 결정)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(단서 삭제)</p>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-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예측불허하거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
- 명예 군민증 수여를 남발할 우려를 사전에 없애고 또, 수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정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로 둔 단서를 삭제하고 수여대상자 결정은 모두 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.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

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4. 20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12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4. 28(총무위원회)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지방세법에 맞도록 조정하고,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함.
- 주민세 및 주행세 등 가산세를 취득세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달리 적용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03. 9. 25, 2003 헌바 16)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한편,
-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자동차세 과세를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에만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분할하여 과세하였으나,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현재 6인 이내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로 하며 서류의 송달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로 한정하던

것을 1매당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는 보통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(안 제17조 제4항 신설)

-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, 주행세, 담배소비세 등 가산세율을 조정함(안 제22조, 제41조의4, 제62조, 제99조).
 - 신고불성실가산세(주민세, 사업소세) ⇒ 100분의 20
 - 신고불성실가산세(주행세, 담배소비세) ⇒ 100분의 10
 - 납부불성실가산세 ⇒ 취득세와 같이 1일 10,000분의 3
-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그 이전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함(안 제39조의1 신설) - 2005. 1. 1부터 시행(부칙)
- 현재 교통세액의 1,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,000의 175로 인상함(안 제41조의3).
-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 - 종합토지세 과표 결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함(안 제74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기능 강화(안 제8조)

-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,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, 고지 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임. 즉 '결정 전 통지'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.
-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세무사, 회계사, 법무사, 세무서 직원 등 외부의 조세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심사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.

나. 가산세 분리(주민세, 사업소세, 주행세, 담배소비세)

- 신고불성실가산세 ⇒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
-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취득세와 같은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.

다. 자동차 승계의 경우 소유기간별 과세(2005. 1. 1시행)

- 과세기간 중 매매·증여 등으로 인해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
⇒ 일할계산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

라.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방법 변경(2006. 1. 1시행)

- 과세표준액 = 개별공시지가 x 군수가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
⇒ 개별공시지가 x 50/100(과세표준액 적용비율)을 적용
-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
-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: 40/100 ⇒ 50/100(연차적 인상)
- 2006년도 시행할 사항에 대해 지금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

마.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
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(해당없음)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4. 20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14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4. 28(총무위원회)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준조세 폐지 차원에서 2004. 1. 1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하고,
-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박물관을 찾는 관람자가 공휴일에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1월1일, 설날, 추석날,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하고자 함(안 제8조)
-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함(안 제11조 별표1)

<관람료 조정내역>

		550	500	50
		440	400	40
·		270	250	20
		220	200	20

-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토록 함 (안 제1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박물관 휴관일 지정 (안 제8조)

- 1월1일, 1월2일 그외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
⇒ 월요일, 1월1일, 설날, 추석날을 휴관일로 변경

나. 관람료 면제 (안 제12조)

-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과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그 안내인도 함께 무료입장하여 관람토록 함.
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에서 고공 등을 이용하는 경우,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동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무료관람토록 하였음.

다.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
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(해당없음)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4. 20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15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4. 28(총무위원회)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2001년도 문화센터 개관당시 제정하여 운용중인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및 신설하고
- 그동안 보완된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를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직제개편에 따라 “문화복지센터”를 “문화센터”로 명칭을 개정함. (안 제7조)
- 문화센터의 사용제한 규정 중 각 종교단체 기념일에 당해 단체의 기념 공연에 한하여는 대관을 허용하도록 함(안 제8조)
-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- 문화센터 사용시간대를 조정함(안 제10조)
- 하절기 냉방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함(안 제10조)
-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(안 제11조 별표1)
-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함(안 제18조)
-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가족회원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사용의 제한 (안 제8조)

-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은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
 - “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”
 - ⇒ “특정 종교의 포교,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, 다만 종교기념일에 당해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기념공연은 허용”

나. 허가의 취소 (안 제9조)

- 허가 취소사유 중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은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
 - “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”
 - ⇒ “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”

다. 문화센터 사용시간 변경(안 제10조)

- 오전 09 : 00 ~ 13 : 00 ⇒ 09 : 00 ~ 13 : 00
- 오후 14 : 00 ~ 18 : 00 ⇒ 13 : 00 ~ 17 : 00
- 야간 19 : 00 ~ 23 : 00 ⇒ 18 : 00 ~ 22 : 00

- 종전에는 오전 사용을 마치고 오후 사용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1시간의 여유시간을 두고 있었으나, 개정안에는 오전 사용을 마치는 시간과 오후 시작시간을 같도록 조정해 둘 경우 오전과 오후 각각의 다른 공연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?

라. 사용료 등 (안 제11조)

- 일부 사용한 경우 전부 사용으로 보아 사용료 전액을 징수
⇒ 사용시간의 1/3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전액을 징수
-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인상

구 분		현 행	개 정	비 고
기본시설 사 용	대전시설	16,400원	20,000원	증 3,600원
	소전시설	7,200원	9,000원	증 1,800원
부대설비 사 용 료	승하강무대	20,000원	30,000원	증 10,000원
	냉난방시설 (공연장, 1회)	50,000원	70,000원	증 20,000원
	냉난방시설 (전시실1회)	10,000원	20,000원	증 10,000원
	무선MIC	-	10,000원	증 10,000원
	T V	-	20,000원	증 20,000원
	라 디 오	-	10,000원	증 10000원
	공연장기본조명	30,000원	40,000원	증 10,000원
	팔로우핀스포트 라 이 트	-	20,000원	증 10,000원
	드라이아이스기	-	20,000원	증 20,000원
	포그머신	-	10,000원	증 10,000원

마. 예술가족회원제 운영 (안 제21조)

- 예술가족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함.

바. 경과조치 (부칙 제2항조)

-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, 개정조례에 의거 허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.

사.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
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는 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

【별표】

2. 부대설비 사용료

개 정 안					수 정 안					
구 분		사용 단위	장소	사용 료	구 분		사용 단위	장소	사용료	
냉난방 시 설	공연장	냉방	1회 공연	공연장	70,000	공연장	냉방	1회 공연	공연장	70,000
		난방	“	“	70,000		난방	“	“	70,000
	전시실	냉방	1일	전시실	20,000	대 전시실	냉방	1일	대전시실	20,000
		난방	“	“	20,000		난방	“	“	20,000
	연습실	냉방	1회	연습실	20,000	소 전시실	냉방	1일	소전시실	9,000
		난방	“	“	20,000		난방	“	“	9,000
					연습실	냉방	1회	연습실	20,000	
						난방	“	“	20,000	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- 조례 개정안 제11조 제1항 【별표】 의 문화센터 사용료 중 대전시실과 소전시실의 기본시설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놓고 있는 반면, 부대설비 사용료 중 냉·난방비시설의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.
- 부대설비 사용료의 구분 중 냉·난방비시설의 “전시실”을 “대전시실”로 변경하고 소전시실난을 삽입하여 냉·난방비를 1일 9,000원을 신설하는 수정안 가결.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

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4. 4. 20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16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4. 28(총무위원회)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노인·여성·장애인 삶의 쉼터 및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취득재산의 표시

(단위 : m²/천원)

구 분	재 산 별	재 산 소 재 지	물 건 및 지 목	수 량	예 정 금 액	비 고
취득	토 지 및 건 물	노인·여성·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	건물	4,628	5,000,000	
		치매요양병원신축	건물	991	1,283,000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노인·여성·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

-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.
- 2003. 7. 14 제101회 임시회에서 부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바 있음.
- 2004년도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음. 도비 확보상황 또는 미확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

나.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

- 2003년도 예산이며, 조례 제정,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올해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음.
- 1건당 1억원 이상이거나 1,000m²이상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- 병원부지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그 위에 병원을 건립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에 관한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율 등을 고려한 건축규모 등을 검토하여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임.
- 따라서, 병원부지에 관한 관리계획과 병원 건축물 신축에 관한 관리계획을 동시에 상정하여 검토하거나, 병원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먼저 상정 검토가 된 후 동 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봄
※'04.4.21.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(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)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(해당없음)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-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할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으므로 병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절차를 조속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